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2021. 12.



안내 글



아파트 경비원은 단지 내의 순찰·방범 등과 같이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업무는 상대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 않은 업무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시적인 야간근로를 수반하는 근무방식은 생체 리듬을 교란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1.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일부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심신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의 야간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무방식 개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있었던 개편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각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근무방식을 개편하고자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단지마다 특성이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다를 수 있으며, 이 자료에서 소개하지 못한 좋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기본 방향	6
대표적인 현재 운영방식과 개편 유형	7
유형별 상세 안내	8
유형 ① 퇴근형 격일제	8
유형 ②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12
유형 ③ 기타 교대제	16

기본 방향



1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방식을 24시간 격일 교대제 위주의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

2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 이해관계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 도출은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3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게 근무방식을 개편하면서도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개편 이후에도 감단 근로자 승인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필요

- 감사·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승인 요건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대표적인 현재 운영방식과 개편 유형



현재 운영방식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대부분 “24시간 맞교대제” 방식

- 경비원 전체를 2개조로 나누어(A조, B조), A조가 오늘은 24시간 근무(B조 휴무), 내일은 휴무(B조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

... 경비원 근무표 예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6명)	07:00 ~07:00 (6명)	휴무 (6명)	07:00 ~07:00 (6명)	휴무 (6명)	07:00 ~07:00 (6명)	휴무 (6명)	07:00 ~07:00 (6명)
B조 (6명)	휴무 (6명)	07:00 ~07:00 (6명)	휴무 (6명)	07:00 ~07:00 (6명)	휴무 (6명)	07:00 ~07:00 (6명)	휴무 (6명)

사례에서 나타난 개편 유형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유형 1** 퇴근형 격일제: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
- 유형 2**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
- 유형 3** 기타 교대제: 경비원의 상주시간(근로시간+휴게)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대제 변경

다음에서 각 유형별 특징 및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개편 사례를 소개

유형별 상세 안내

(이하 기존 제도를 24시간 맞교대제로 가정)



유형 ① 퇴근형 격일제

개편 내용

경비원 전체를 2개조로 나누어(A조, B조),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근무하는 날에 근무조 모두가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당번을 정해서 2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

- 예) 경비원 12명을 A조(6명), B조(6명)로 편성 → 오늘은 A조, 내일은 B조가 근무하되, 각 조의 근무일에 2명씩 당번을 정하여 당번은 24시간, 그외 4명은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

... 경비원 근무표 예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6명)	07:00 ~22:00 (6명)	휴무 (6명)	07:00 ~22:00 (6명)	휴무 (6명)	07:00 ~22:00 (6명)	휴무 (6명)	07:00 ~22:00 (6명)
	22:00 ~07:00 (당번 2명)		22:00 ~07:00 (당번 2명)		22:00 ~07:00 (당번 2명)		22:00 ~07:00 (당번 2명)
B조 (6명)	휴무 (6명)	07:00 ~22:00 (6명)	휴무 (6명)	07:00 ~22:00 (6명)	휴무 (6명)	07:00 ~22:00 (6명)	휴무 (6명)
		22:00 ~07:00 (당번 2명)		22:00 ~07:00 (당번 2명)		22:00 ~07:00 (당번 2명)	

주요 특징

- 기존의 근무 형태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무 장소에 상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일 출근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할 때 적용하기 좋은 방식임
- 전체 근무시간은 출·퇴근 시간의 설정, 야간 당번의 주기, 휴게시간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됨
- 경비원의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의 정도·빈도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

고려사항

- 경비원의 야간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 감소가 없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경비원이 경비업무가 아닌 관리업무를 많이 수행할 경우 감단 승인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을 준수하도록 퇴근시간, 야간근로 순번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야간경비를 위한 당번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순찰이 많이 필요 하면 많이 배치하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배치할 수 있음
- 예) △야간 순찰 수요가 많은 경우는 각 조 인원의 절반씩, △야간 순찰 수요가 적은 경우는 최소인원(1~2명), △야간 순찰 수요가 매우 적은 경우는 당번 없이 전체 경비원이 격일 퇴근하는 형태 등 상황 따라 결정



결과적으로 야간 경비인력은 축소되지만, 통상 야간에 휴게시간을 길게 운영하므로(7~8시간), **당번 근무자의 휴게시간 조정 등으로 경비인력 감소 효과는 일부 상쇄** 될 수 있음

* 현재는 대부분 야간에 7~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나, “퇴근형 격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 휴게시간을 일부 줄이고, 근무시간을 다소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사례A 경비원 16명을 2개조(8명씩)로 나누어 **하루씩 번갈아 근무** 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근무일에 근무조 8명 중 **일부(5명)는 밤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일부 당번(3명)은 야간까지 근무**

근무 방식

- 기존** 1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8명) 24시간 맞교대제
- 변경** 1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8명) 맞교대제 → 근무일에 8명 중 5명은 저녁에(10시) 퇴근하고, 당번 3명은 야간근무(24시간)
* 일요일 근무 인원은 절반(4명)으로 축소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상주시간: 06:00 ~ 익일 06:00)
- 변경** ①퇴근일: 근로시간 12시간, 휴게시간 4시간(상주시간: 06:00 ~ 22:00)
②당번일: 근로시간 13.5시간, 휴게시간 10.5시간
(상주시간: 06:00 ~ 익일 06:00)

경비원 배치

- 기존** 동별 경비실에 한 명씩 근무
- 변경** 주간에는 동별로 한 명씩 근무, 야간에는 3명이 단지 순찰

사례B 경비원 6명을 2개조(3명씩)로 나누어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근무하는 날에 근무조 3명 중 **일부(1명)는 밤 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일부 당번(2명)은 야간까지 근무**

근무 방식

- 기존** 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3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3명) 맞교대제로 근무 → 근무일에 3명 중 1명은 저녁에(10시) 퇴근하고, 당번 2명은 야간근무(24시간)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상주시간: 07:00 ~ 익일 07:00)
- 변경** ①퇴근일: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상주시간: 07:00~ 22:00)
②당번일: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
(상주시간: 07:00 ~ 익일 07:00)

경비원 배치

- 기존** 3개 초소에 각 1명씩 근무
- 변경** 주간에는 3개 초소에 각 1명씩 근무, 야간에는 2개 초소만 각 1명씩 근무

유형 ②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개편 내용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경비 외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하여

경비원은 종전처럼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면서 경비업무를 전담하고(감단 승인이 필요)

관리원은 **1일 8시간 근무 등 주간 근무로 전환**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감단 승인 대상 업무가 아님)

- 예) 경비원 12명을 경비원(6명), 관리원(6명)로 나누어,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고, 관리원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하는 방식

... 경비원·관리원 근무표 예시 ...

경비원:6명 기존의 24시간 맞교대제 유지 → 경비업무 전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3명)	07:00 ~07:00 (3명)	휴무 (3명)	07:00 ~07:00 (3명)	휴무 (3명)	07:00 ~07:00 (3명)	휴무 (3명)	07:00 ~07:00 (3명)
B조 (3명)	휴무 (3명)	07:00 ~07:00 (3명)	휴무 (3명)	07:00 ~07:00 (3명)	휴무 (3명)	07:00 ~07:00 (3명)	휴무 (3명)

관리원:6명 주5일 주간 근무로 변경 → 관리업무 전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C조 (3명)	09:00 ~18:00 (3명)	09:00 ~18:00 (3명)	휴무 (3명)	09:00 ~18:00 (3명)	09:00 ~18:00 (3명)	09:00 ~18:00 (3명)	휴무 (3명)
D조 (3명)	09:00 ~18:00 (3명)	휴무 (3명)	09:00 ~18:00 (3명)	09:00 ~18:00 (3명)	09:00 ~18:00 (3명)	휴무 (3명)	09:00 ~18:00 (3명)

주요 특징

- 관리업무가 많은 단지에서 전체 경비원이 경비와 관리업무를 동시 수행하여 감단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임
- 또한 기존 경비원의 선호에 따라 일부는 격일 맞교대제를 선호하고, 일부는 매일 출근하더라도 주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함
- 경비원의 근로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관리원으로 전환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감소할 수 있음

고려사항

- 관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단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되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이에 따라 임금과 관리비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됨 → 큰 폭의 변화가 없도록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경비원을 관리원(일반 근로자)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시간, 휴게·휴일 준수 필요
→ 연장·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발생 가능

- 아파트 단지의 업무특성(야간 경비 수요, 관리업무 수요 등)에 따라, **경비원과 관리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경비원의 경우, 야간근로 및 총 근로시간 감소를 위해 24시간 맞교대제를 **퇴근형 격일제, 3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관리원의 경우, 아파트 사정에 따라 1일 근무시간, 휴무일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주5일제** 또는 **주6일제** 등 선택이 가능하고, **오전·오후 근무조**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함
-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관리원은 관리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C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절반씩 나누어,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고, 관리원은 오전·오후조로 나누어 주6일 근무



근무 방식

- 기존** 8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4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8명 중 4명은 경비원(24시간 맞교대제)
4명은 관리원(주6일근무)으로 근무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상주시간: 06:00 ~ 익일 06:00)
- 변경** ①경비원: 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9시간
(상주시간: 06:00 ~ 익일 06:00)
②관리원: (오전 근무조)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상주시간: 06:00 ~ 17:00)
(오후 근무조)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13:00 ~ 23:00)
* 토요일은 6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경비원 배치

- 기존** 권역별 3개의 경비초소에 근무(1개 초소는 2명)
- 변경** 정, 후문 2개 경비초소 한 명씩 근무

사례D 경비원(4명)을 순찰관리원(3명)과 환경관리원(1명)으로 나누어, 순찰관리원은 주4회는 8시간 근무(3명이 8시간씩 교대), 2회는 12시간 근무(2명이 12시간씩 교대, 1명 휴무)하고, 관리원은 주6일 근무



근무 방식

- 기존** 4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2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4명 중 3명은 순찰관리원, 1명은 환경관리원으로 구분하고 근무방식도 각각 변경
①순찰관리원: 8시간 근무(주4회), 12시간 근무(주2회), 휴무(주1회)
②환경관리원: 주간 전담, 주6일 근무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7시간, 휴게시간 7시간(상주시간: 07:00 ~ 익일 07:00)
- 변경** ①순찰관리원: (8시간 근무)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A 06:00~14:00 / B 14:00~22:00 / C 22:00~익일 06:00)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A 06:00~18:00 / B 18:00~익일 06:00)
②환경관리원: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08:00 ~ 17:00)
* 토요일은 4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경비원 배치

1개 경비 초소에 근무(2명 → 1명)

유형 3 기타 교대제

개편 내용

단지 상황에 맞게 경비원의 상주 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교대제 방식**으로 개편
: 3조 교대제(주주야야비비, 주당비 등), 주·야간 전담제 등

주요 특징

- 경비원이 24시간 상주 또는 야간근로 등을 이유로 24시간 맞교대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기 좋은 방식임
- 이 경우 통상 기존의 “24시간 맞교대제”에 비해 근무일은 증가하면서, 상주 시간 및 전체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방식임

고려사항

- 단지별 특성과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의 교대제 근무형태 중 특성에 맞는 방식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경비원의(감단승인 유지 가정) 야간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 감소가 없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경비원이 관리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감단 승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퇴근 시간, 야간근로 순번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경비원의 경우 매일 근무 등 근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민의 경우 근무하는 경비인력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필요함

구체적인 개편 방식 3조2교대제, 주당비 등 다양한 형태

- ① **(3조2교대제)** 3개조가 번갈아 12시간 상주하는 방식의 교대제로 **주주야야비비**(6일 주기), **주야비**(3일 주기) 등의 형태로 근무

... 경비원 근무표 예시(주주야야비비)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4명)	07:00 ~19:00 (4명)	07:00 ~19:00 (4명)	19:00 ~07:00 (4명)	19:00 ~07:00 (4명)	휴무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B조 (4명)	19:00 ~07:00 (4명)	19:00 ~07:00 (4명)	휴무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07:00 ~19:00 (4명)	19:00 ~07:00 (4명)
C조 (4명)	휴무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07:00 ~19:00 (4명)	19:00 ~07:00 (4명)	19:00 ~07:00 (4명)	휴무 (4명)



② (주당비) 3개조가 (주간 근무)-(당번, 24시간 근무)-(휴무)를 번갈아 시행

... 경비원 근무표 예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4명)	07:00 ~19:00 (4명)	07:00 ~07:00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07:00 ~07:00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B조 (4명)	07:00 ~07:00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07:00 ~07:00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07:00 ~07:00 (4명)
C조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07:00 ~07:00 (4명)	휴무 (4명)	07:00 ~19:00 (4명)	07:00 ~07:00 (4명)	휴무 (4명)

③ (주간/야간 전담제) 주간 전담, 야간 전담 경비원 별도 운영

12명을 주간 6명, 야간 6명으로 구분한 후

주간업무 는 각자 6일(또는 5일) 근무 후 1일(또는 2일) 휴무,

야간업무 는 다시 2개조로 나눠 격일 야간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

주·야 근무조는 일정 주기별로 교체 가능(예: 1달 주기 등)

【주간 전담】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휴무
B조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휴무	08:00 ~18:00 (1명)
C조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휴무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D조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휴무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E조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휴무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F조 (1명)	08:00 ~18:00 (1명)	휴무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08:00 ~18:00 (1명)

주5일 근무 후 1일 휴무, 주6일 근무 후 1일 휴무 또는 주 5.5일 근무 후 1일 휴무 등 단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위의 표는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나타낸 것임)

【야간전담】 격일 교대 근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G조 (1명)	18:00 ~08:00 (3명)	휴무 (3명)	18:00 ~08:00 (3명)	휴무 (3명)	18:00 ~08:00 (3명)	휴무 (3명)	18:00 ~08:00 (3명)
H조 (1명)	휴무 (3명)	18:00 ~08:00 (3명)	휴무 (3명)	18:00 ~08:00 (3명)	휴무 (3명)	18:00 ~08:00 (3명)	휴무 (3명)



사례E 경비원 6명을 2개조(3명씩)로 나누어 24시간 맞교대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3개조(2명씩)로 나누어 12시간씩 3조2교대제로 변경(주주야야비비)



근무 방식

- 기존** 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3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6명을 3개조로 나누어(각 조 2명) 12시간씩 3조2교대제(주주야야비비) 근무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6.5시간, 휴게시간 7.5시간(상주시간: 06:00 ~ 익일 06:00)
- 변경** (주간) 근로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상주시간: 07:00 ~ 19:00)
(야간)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19:00 ~ 익일 07:00)

경비원 배치

- 기존** 정문초소 2명, 후문초소 1명
- 변경** 정문초소 1명, 후문초소 1명

사례F 2개조,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교대제(주당비)로 변경



근무 방식

- 기존** 4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2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3명을 주당비(8시간-24시간-휴무) 방식으로 근무
* 기존 4명에서 직원 1명이 퇴사한 후 3명이 남게 된 상황에서 근무방식을 변경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상주시간: 08:30 ~ 익일 08:30)
- 변경** (주간)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상주시간: 09:00 ~ 18:00)
(당번) 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9시간
(상주시간: 08:30 ~ 익일 08:30)

경비원 배치

- 기존** 동별 통합 2곳 초소 각 1명
- 변경** 권역별 1곳 초소 1명



사례G

2개조, 24시간 맞교대제에서 주·야간 전담 절반씩 나누어
각각 근무방식 변경



근무 방식

기존 8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4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변경 8명을 절반씩 주간·야간 전담으로 구분하고 근무방식도 각각 변경

①주간: 주6일 근무 후 주 1일 순환 휴무(토, 일, 월, 화)

②야간: 격일근무(18:00~08:00)

근무 시간

기존 근로시간 17시간, 휴게시간 7시간(상주시간: 06:00 ~ 익일 06:00)

변경 (주간) 근로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상주시간: 07:00 ~ 19:00)

(야간) 근로시간 13.5시간, 휴게시간 0.5시간

(상주시간: 18:00 ~ 익일 08:00)

경비원 배치

기존 정문, 후문, 중문 초소에서 동별 통합 관리

변경 주간전담은 동일, 야간전담은 정·후문 각 1명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www.moel.go.kr

인쇄처 동명기획 ☎ 044)868-7542

© 고용노동부, 2021